

2014  
통권 제7호

KOREAN NOTARIES ASSOCIATION



# 공증과 신뢰

# 2014 공증과신뢰 (통권 제7호)

시 론	김 진 환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04
특 집	법무부 공증사무지침의 내용 및 공증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과제 / 박혁수 후견계약에 관한 연구 / 박상진	09 37
논 단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한 고찰 - 법인등기 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 / 남상우	117
단 상	웰-다잉(Well-dying)의 시대 –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에 관한 소론 / 김철기	169
국 제 회 의 보 고 서	제3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참가보고서 / 박광빈 2013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정기총회 및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 참석보고서 / 안원모	173 211
공 증 사 무 지 치	수시 특별감사의 기준 징계 전(前) 인가취소 · 면직 신청 및 공증담당변호사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 변역문 인증사무 지침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변동에 관한 처리 기준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221 222 223 234 240 242 243
법령자료 및 유 권 해 석	새 법령 및 고시 법무부 지시사항 및 유권해석	247 298
주 요 소 식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공증인 윤리 강령	317 340 352

## 유언 공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언 공정증서의 이용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공증사무를 많이 처리한 상위 50개의 사무소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42만 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건수는 761건으로 평균 0.2%에 불과하다. 공증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1개의 사무소가 1년에 15.2건을 취급하였으니, 사무소당 한 달에 1건 정도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이 된다. 1990년 대 이전에 우리 사회는 유언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언 공증을 아예 접해보지 못하는 공증사무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히 재벌가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유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산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분배된다면 유언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큰 아들을 중시하는 관념이나 남아선호 사상이 잔존하고 있어 민법의 법정상속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유산의 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구나 우리 상속법은 상속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생전에 중여를 받거나 특별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그만큼 공제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생전증여에 관해서 특별수익인지 아닌지는 물론이고 특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유언이 있다면 보통은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굳이 그러한 소송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유언에 의하여 손쉽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와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성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배우자의 상속분을 크게 늘리는 민법 개정 논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유언을 상담하는 사례도 있다.

재산에 관한 것만 유언의 대상은 아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도록 되었다. 유명 탤런트의 사망 이후에 불거진 문제로 민법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그만큼 유언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이다.

영화에서 더러 보는 것처럼 망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앞의 논은 장남이 가지고, 뒤의 산은 차남이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유언이 아니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유언 방법은 자필증서이나, 유언자의 자필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등 사망 이후에 법적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필증서

는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날인이 누락된 자필증서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유명 사립대학과 상속인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세인의 관심을 끈 일도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자필증서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가능성성이 높다. 편집에 의한 변조의 가능성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비해 유언 공증은 그 효력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을 참여시키고 유언을 말로 구수하고, 공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구수한 대로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정확하면 이를 승인한 후 공증인과 유언자 및 증인이 서명날인하여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언 공증이다.

얼핏 보면 유언공증은 증인을 대동해야 하는 등 다른 방식보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훨씬 정확하며, 법적효력이 확실하다는 데에 이점이 있다. 자세히 열거하면 유언이나 상속에 관한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므로 무효로 될 가능성 이 거의 없다. 또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므로 유언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증서가 작성되거나 증서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유언 증서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20년간 보존하므로 유언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다. 유언의 집행단계에서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자필증서 등 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유언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만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할 수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신속하게 유언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과 상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해 7월 몽골에서 개최된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에서도 “유언과 상속재산 양도”에 관한 공증인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지난해 10월 폐루에서 열린 국제공증인대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유언의 활성화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유언과 공증을 연계하여 생각하는 일반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분쟁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대법원 사법통계 자료를 보면, 2002년에 유언에 관한 사건은 109건, 상속에 관한 사건은 16,034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유언 사건 232건, 상속 사건 31,682건으로 약 10년 동안 2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 공증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유언공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증주간 행사에서 주로 공증제도를 홍보하였는데 앞으로는 유언공증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예방사법제도로서의 공증에 대한 1일 교육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유언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유언공증을 해놓을 경우 사후 재산상 다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러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유언 공증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유언 공정증서의 보존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한다든지, 유언 공정증서 철을 따로 마련하여 일반 공정증서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망인의 사후 자녀나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유언 공정증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한 조회절차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공증인이 유언 증서를 작성하면 협회에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를 토대로 전국 공증인 사무소의 유언 공정증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의 대상이다. 망인의 유족이 개개의 공증인 사무소를 찾았다  
닐 필요 없이 협회만 방문하면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법률과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유언 공증  
을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홍보와 제도의 개선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